

## 부속한방병원 발전추진위원회규정

제정 2020. 03. 20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96조 및 직제규정 제17조에 명시된 부속한방병원의 발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속한방병원 발전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한다.

1. 부속한방병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부속한방병원의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3. 부속한방병원의 건설 및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
4. 부속한방병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5. 그 밖에 총장, 위원장 또는 부속한방병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는 12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사회협력부총장
2. 학교법인 상지학원 사무국장
3. 교육연구처장, 기획평가처장, 대외협력처장
4. 보건의료과학대학장, 한의과대학장
5. 부속한방병원장
6. 부속한방병원 진료부장·교육연구부장
7. 총장이 추천하는 2인(한의학과 임상교원 포함)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위원장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협력부총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**제6조(경비지원)**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간사)** 위원회는 기획예산팀이 주관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**제8조(자료제출 의무)**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각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실무소위원회)** ①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안에 실무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**제10조(회의록 작성)**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운영세칙)**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193, 2020.03.20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